



고자 하는 바이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감사인에게 제시하는데, 회계감사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경영진주장(Management Assertions)이라고 한다. 이 때 경영진은 암묵적이든 또는 명시적이든 “해당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감사인은 경영진이 주장하는 바가 맞는지를 회계감사기준(Auditing Standard)에 따라 감사한다.

(2) 관련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

관련된 증거를 객관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하는 것은 감사기술(audit technique)과 관련된 개념이다. 감사증거는 주로 재무제표, 회계기록 및 다양한 형태의 증빙서류 등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재고자산의 실물검사와 같이 물리적 검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3)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 정도 확인

회계감사의 본질은 기업의 건전성 여부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이다. 여기서 사전에 설정된 기준이란 재무보고체계 즉, 회계기준(Accounting Standards)을 의미한다. 즉, 회계감사는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4) 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인 과정

회계감사는 감사결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종결된다. 회계감사의 결과는 감사보고서(auditor's report)로 작성되며, 감사보고서에는 사전에 설정된 기준과의 일치여부에 대한 감사의견(auditor's opinion)이 포함된다.

2 회계감사와 관련된 기본개념

회계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사항을 이해하여야 한다.

2.1 재무제표감사에서 회계감사의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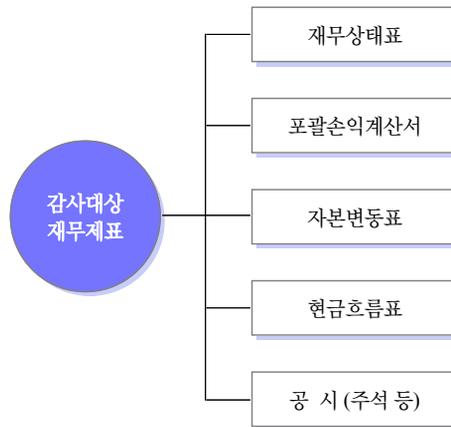
회계감사기준에서 정하는 회계감사의 대상은 재무제표(별도재무제표 + 연결재무제표)에 국한된다. 재무제표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ISA 200-13).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것은?

감사대상 재무제표(ISA 200-13)

재무제표란 어떤 기업의 일정시점의 경제적 자원이나 의무의 상태 또는 일정기간의 이들의 변동을 일정한 재무보고체계에 따라 커뮤니케이션하도록 의도된 역사적 재무정보의 체계적인 표시로서, 관련 공시(disclosures)를 포함한다. 관련 주석은 통상 유의적인 회계정책의 요약과 그 밖의 설명정보로 구성된다. “재무제표”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 사항에 의하여 결정된 전체재무제표를 지칭하지만, 단위재무제표를 지칭할 수도 있다. 공시(disclosures)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①재무제표 본문이나 주석 또는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 되도록 요구되거나, ②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나 서술적 정보로 구성된다.



회계감사기준이 일부 개정(2022.4)되었는데, 기준서 전반에 걸쳐 언급하는 재무제표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개정 감사기준서는 ‘관련 주석’이라는 표현 대신 ‘공시’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개정 감사기준서에서 언급하는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만을 의미하며 정기공시나 수시공시와 같이 재무보고체계가 아닌 다른 법규 등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는 포함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위 정의에서 언급한 ‘상호참조로 그에 포함되도록 요구되거나, 명시적으로 허용되거나, 또는 달리 허용되는 것으로 제시된 설명적 정보’ 역시 해당 재무보고체계에서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정보로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주석에서 다른 보고서를 참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 재무제표가 아닌 다른 공시 정보에서 재무제표 또는 재무제표 주석을 참조한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즉, 표현이 변경되었다고 해서 감사대상 재무제표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아니다(감사기준서 주요개정내용 14-18).

Q
 추가감사절차
 = 통제테스트 + 실증절차

Q
 경영진이 재무제표를 통하여 주장하는 바는?

TIP
 보고기간말 계정잔액에 대한 경영진주장은 재무상태표에 대한 주장을 말한다.

하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즉, 감사는 합리적으로 감사절차를 계획하고 이를 제대로 실행하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수집할 수 있으며, 충분하고 적합한 증거에 기초한 감사인의 판단(감사의견)은 높은 수준의 확신을 제공할 수 있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감사증거는 통제테스트와 실증절차를 적절히 조합함으로써 수집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증절차만을 통하여 수집할 수도 있다. 통제테스트(tests of control: TOC)란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증거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사를 말한다. 실증절차(substantive procedures)란 재무제표 내에 중요하게 왜곡표시되어 있는 사항을 적발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시사를 말한다.

2 재무제표에 의한 경영진주장과 감사증거

경영진은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재무제표가 재무보고체계(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이를 경영진주장(financial statements assertions)이라 한다. 감사인은 과연 경영진주장이 적절한지 여부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증거를 수집한다. 이 때 감사증거는 감사인이 표명하는 감사의견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하고 적합해야 한다. 따라서 경영진주장은 곧 감사목적이 된다.

2.1 재무제표(범주)별 경영진주장

재무제표에 대한 경영진주장은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다’는 것이지만 다음의 두 가지 범주로 분류된다(ISA 315-A129).

경영진주장의 대상	경영진주장
(a) 보고기간말 계정잔액 및 관련 공시 (Account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재성: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실재함 • 권리와 의무: 기업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거나 통제하고 있으며 부채는 기업의 의무임 • 완전성: 기록되어야 하는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모두 기록되었으며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음 • 정확성, 평가 및 배분: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합한 금액으로 재무제표에 계상되어 있고 평가나 배분의 결과는 적합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 공시는 적합하게 측정되고 기술되어 있음 • 분류: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 표시: 자산, 부채 및 주주지분은 적합하게 합산되거나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함



(b)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과 관련 공시 (Transa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생사실: 기록되거나 공시된 거래와 사건은 발생되었고 기업에 귀속됨 • 완전성: 기록되어야 하는 모든 거래와 사건은 기록되었으며 재무제표에 포함되어야 하는 모든 관련 공시는 재무제표에 포함되었음 • 정확성: 기록된 거래와 사건에 관련된 금액 및 기타 데이터는 적합하게 기록되었고 관련 공시는 적합하게 측정되고 기술되었음 • 기간귀속: 거래와 사건은 해당 보고기간에 기록되었음 • 분류: 거래와 사건은 적절한 계정으로 기록되었음 • 표시: 거래와 사건은 적합하게 합해지거나 세분화되고 명확하게 기술되었으며 관련 공시는 해당 재무보고체계의 요구사항의 측면에서 관련성이 있으며 이해가능함
---	--



TIP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에 대한 경영진주장은 손익계산서와 현금흐름표에 대한 주장과 재무상태표 항목 중 기중거래에 대한 주장을 말한다.

보고기간말 계정잔액 및 관련 공시 (Accounts: 자산, 부채 및 자본)	감사대상기간의 거래 및 사건의 유형과 관련 공시 (Transactions: 손익항목 및 자산·부채·자본의 기중거래)
실재성(Existence)	발생사실(Occurrence)
권리와 의무(Rights and obligations)	
완전성(Completeness)	완전성(Completeness)
정확성(Accuracy), 평가와 배분(Valuation and allocation)	정확성(Accuracy)
	기간귀속(Cutoff)
분류(Classification)	분류(Classification)
표시(presentation)	표시(presentation)

2.2 세부 경영진주장

상기 경영진주장은 잔액에만 적용되는 것, 거래에만 적용되는 것 그리고 공시에만 적용되기도 하지만 둘 이상에 서로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또한 어떤 경영진주장은 개념은 같지만 적용되는 대상(잔액, 거래 및 공시)에 따라 명칭이 다르기도 하다. 경영진주장의 세부 개념은 다음과 같다.

(1) 실재성(Existence)과 발생사실(Occurrence)

실재성이란 ‘자산, 부채 및 자본은 보고기간 종료일 등 주어진 특정일자 현재에 존재한다’는 경영진주장과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목적에 말한다.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은 과대계상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일반적으로 경영진은 자신의 경영성과를 과대계상하기 위하여 자산은 과대계상, 부채는 과소계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재성은 부채보다는 자산을 감사할 때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감사목적이다. 예를 들면, 재무제표상 재고자산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 등이 있다.

발생사실은 ‘거래나 사건들이 회계기간 동안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것에 대한 경영진주장과 실제로 발생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감사목적에 말한다.



세부 경영진주장의 개념을 상세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기출 2022

- (g) 적발통제(Detective control): 이미 발생하여 이로 인해 재무제표의 왜곡표시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오류나 부정을 발견하고 수정하는 목적을 가진 통제
- (h) 준거기준(Criteria): 인증대상을 측정하거나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기준
- (i) 중요한 취약점(Material weakness): 내부회계관리제도 미비점 혹은 미비점들의 결합으로, 기업의 연차재무제표 또는 중간재무제표의 중요한 왜곡표시가 적시에 예방되거나 발견·수정되지 못할 가능성이 낮지 않은(more than remote) 경우에 존재한다.
- (j) 통제목적(Control objective): 통제의 목표 또는 목적. 통제목적은 통제가 완화하고자 하는 위험에 대처하는 것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상황에서, 통제목적은 일반적으로 유의적인 거래유형, 계정잔액 및 공시에 대한 관련경영진주장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정 영역의 통제가 관련경영진주장의 왜곡표시 또는 누락을 적시에 예방하거나 발견·수정한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지 못할 위험에 대처한다.

1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의 의의

주권상장법인은 규모와 관계없이 그리고 비주권상장법인은 직전연도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들 회사는 외감법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를 받아야 한다.

외감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도입한 초기에 모든 회사는 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검토받도록 하였다가 2019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감사인의 감사로 전환해 왔다. 계획대로라면 2024년부터 모든 상장법인은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받아야 하지만 소규모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에서 제외하고 검토받도록 하는 세계적인 추세를 반영하여 2022년에 자산 1천억원 미만의 상장법인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검토대상으로 남게 되었다.

기출 2022



TIP

자산총액 1천억원 미만의 상장기업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서 제외하는 사항은 2022년 12월 경 입법이 완료되어야 확정된다.
→ 향후 입법추이 확인

감사			검토
별도	연결		
주권상장법인 (자산 1천억원 이상)	2조 이상	이미 적용	주권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미만) + 주권비상장법인(자산 1천억원 이상)
	5천억 이상 2조 미만	2023년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2024년	

※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여야 하는 회사(외감법 제8조): 전체 주권상장법인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1 감사인과 회사간 특정 관계가 형성된 경우 업무제한

공인회계사법은 감사인과 회사간 특정 관계가 형성된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를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인 제한은 ①공인회계사를 제한하는 것 그리고 ②회계법인을 제한한 것이 있다.

기출 2022

- ☞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제한은 다음 두 가지를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 ① 개업공인회계사 개인으로서 외감법 감사 이외의 감사와 같은 증명업무를 제공할 경우
 - ② 개업공인회계사가 조직한 감사반으로서 감사와 같은 증명업무를 제공할 경우

공인회계사에게 적용되는 직무제한(공인회계사법 제21조) ☞	회계법인에게만 적용되는 직무제한(공인회계사법 제33조)
	① 회계법인이 주식을 소유하거나 출자하고 있는 회사
	② 회계법인의 사원이 다음의 관계가 있는 회사
① 자기 또는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책임자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자	a.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책임자 포함)에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직위에 있었던 회사
② 자기 또는 배우자가 그 직원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자	b.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그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직원이었던 회사
③ 자기 또는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자	c. 회계법인의 사원 또는 그 배우자와 뚜렷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 직무를 공정하게 행하는 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의 회사
a. 당해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	1. 당해 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b.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특정 Grandfathered Loan은 허용된다.	2. 사원 또는 그 배우자와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 다만, 특정 Grandfathered Loan은 허용된다.
	③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다음의 회사
	a. 과거 1년 이내에 자기의 재무제표 등에 대하여 감사 또는 증명업무를 행한 회계법인의 담당사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원이나 그에 준하는 직위(재무책임자 포함)에 있는 회사
	b. 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회사. 다만, 특정 Grandfathered Loan은 허용된다.



<p>①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자</p> <p>②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자</p> <p>③ 당해 공인회계사에게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자</p>	<p>c. 회계법인과 다음의 관계가 있는 회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해 회계법인에게 무상으로 또는 일반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로 공인회계사 사무소나 영업용 차량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2. 당해 회계법인에게 공인회계사 업무외의 업무로 인하여 계속적인 보수를 지급하거나 기타 경제상의 특별한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회사 3. 당해 회계법인에게 공인회계사 직무를 수행하는 대가로 자기 회사의 주식·신주인수권부사채·전환사채 또는 주식매수선택권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기로 한 회사
---	---

위에서 특정 Grandfathered Loan은 다음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채권·채무(Grandfathered Loan)관계는 감사인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Grandfathered Loan(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 ①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 ②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상품에 대해 약관에 따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중 일부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반적인 거래조건보다 유리하게 체결한 계약이나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기 시정조치를 받거나 받아야 하는 금융기관과 체결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는 제외한다.)
- ③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 ④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 ⑤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 ⑥ ①~⑤의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상거래를 위해 약관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발생한 3천만원 미만의 채권 또는 채무

2 감사와 동시에 제공할 수 없는 비감사서비스

상기와 같이 감사인과 회사(연결 종속회사 포함)간의 특정 관계를 제한하는 것 이외에 공인회계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비감사업무를 감사와 동시에 수행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다른 회사와 지배·종속 관계에 있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 지배회사의 감사인은 지배회사 뿐만 아니라 모든 종속회사에 대

- ① 다음의 채권 또는 채무 중 감사기간 중에 만기를 연장한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 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계약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 ② 건축물이나 주택의 분양·공급 등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와 일괄적으로 체결한 대출계약으로 발생한 채무
- ③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지급기일이 2개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않은 채무
- ④ ①~③ 채권 또는 채무 외의 것으로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